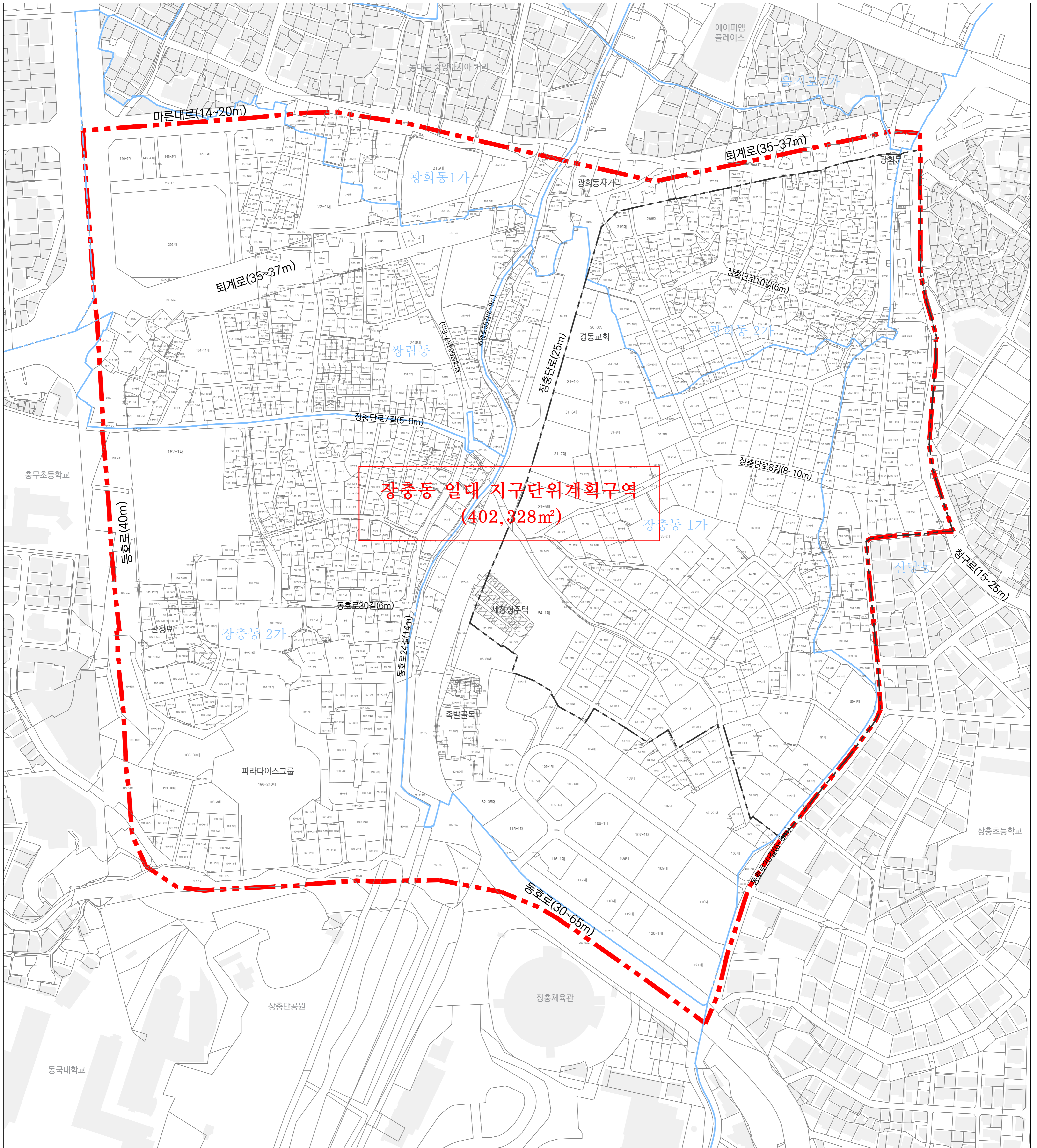


II

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	136
②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도	137
③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(기정)	138
④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(변경)	139
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	14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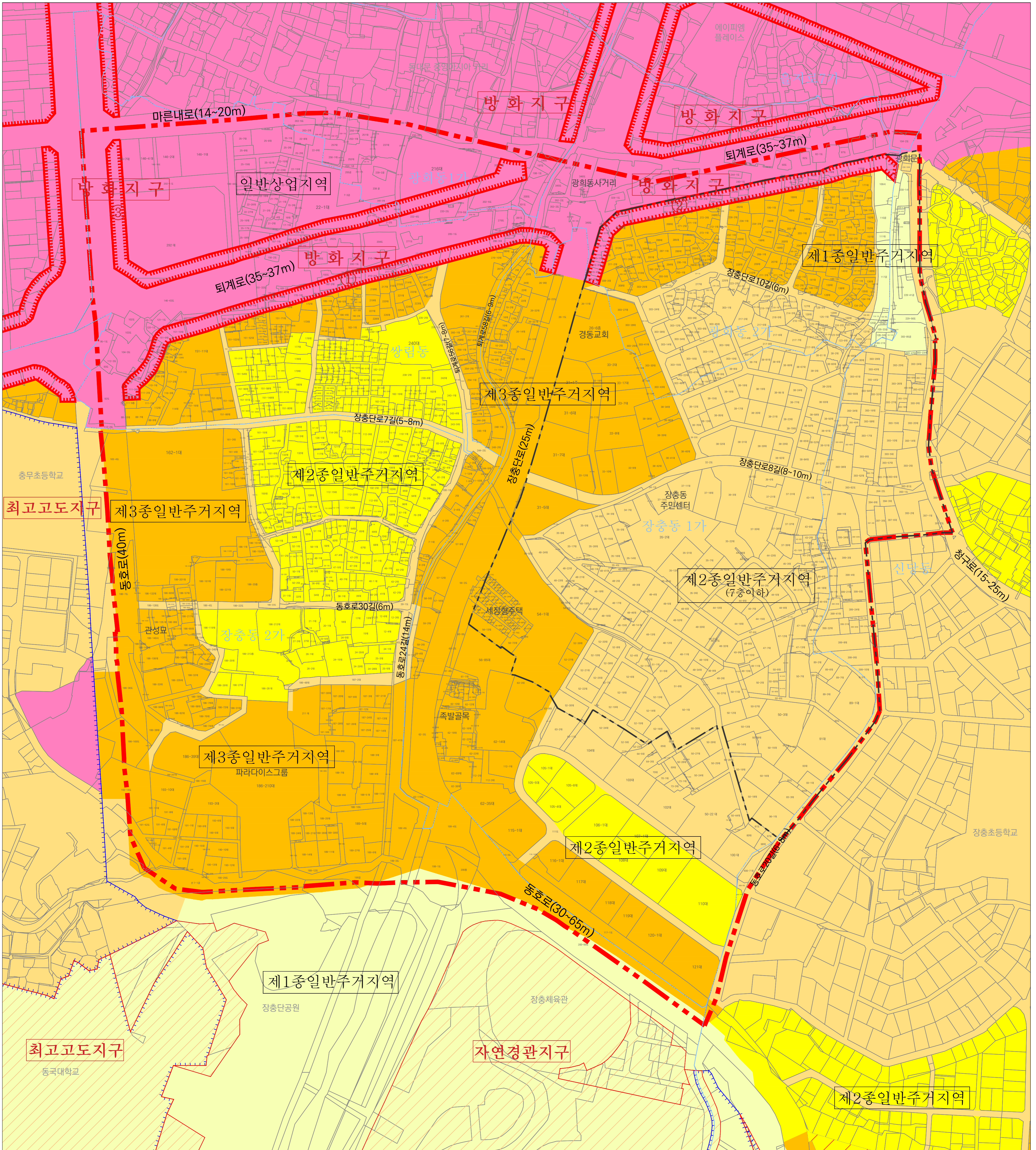
- LEGEND**
- 지구단위계획구역
 - 광희권(광희·장충)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
 - 지적선
 - 법정동 경계

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
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

scale 1/1,500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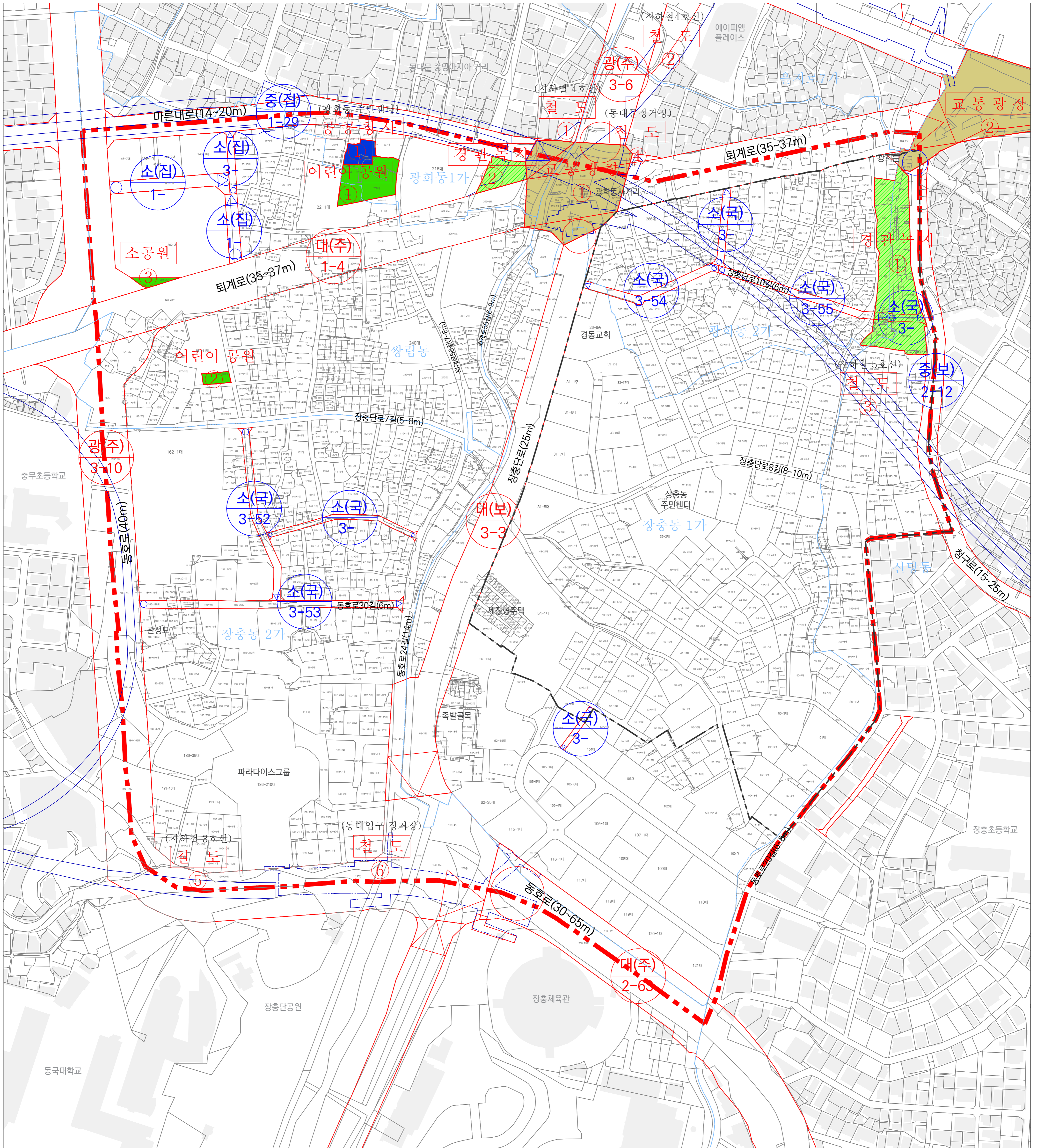
- LEGEND**
- 지구단위계획구역
 - 광희권(광희·장충)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
 - 지적선
 - 법정동 경계
 - 제1종일반주거지역
 - 제2종일반주거지역
 - 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
 - 제3종일반주거지역
 - 일반상업지역
 - 방화지구

**장충동 일대
지구단위계획**

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

scale 1/1,500

0 15 50 100



LEGE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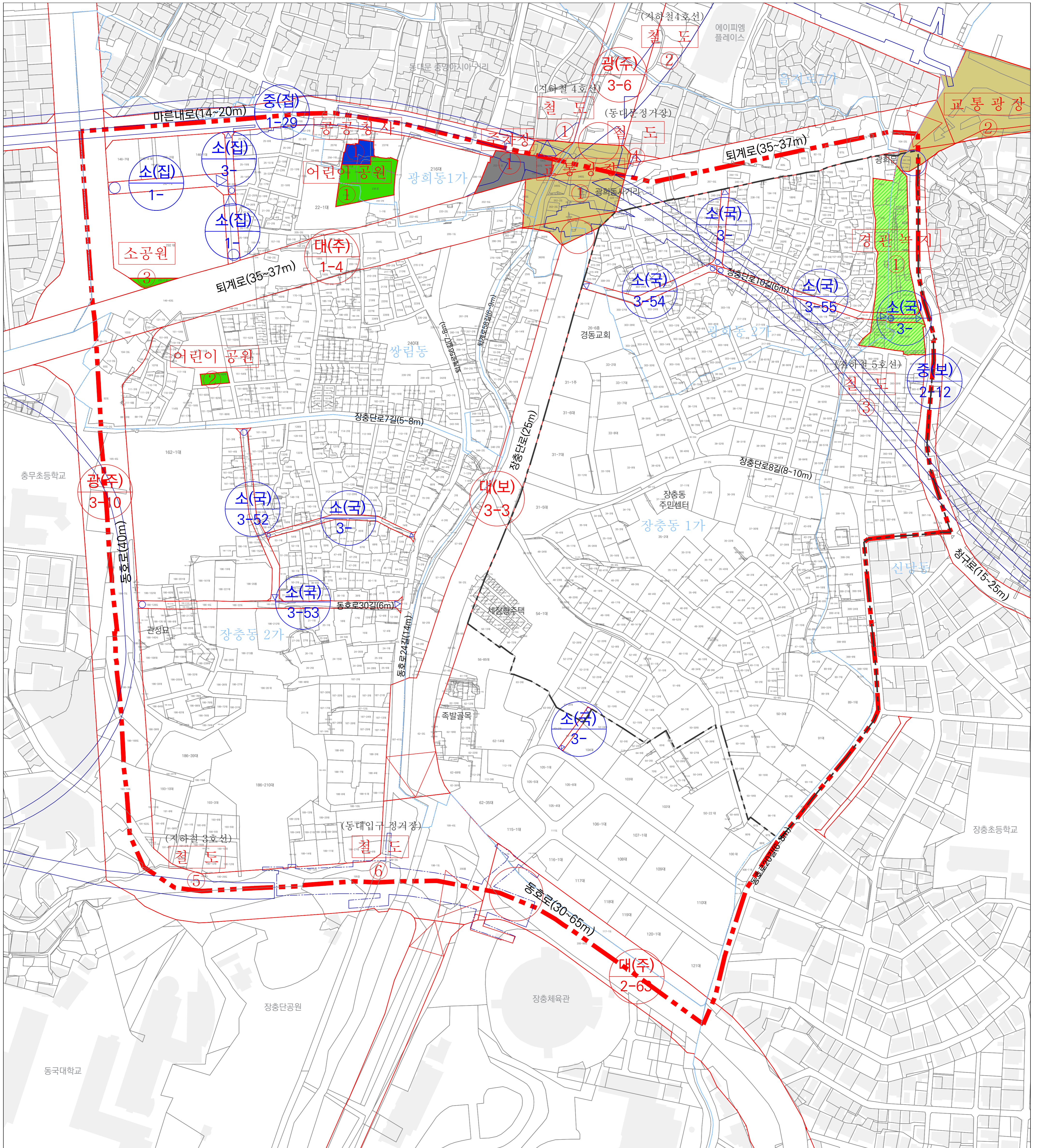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광희권(광희·장충)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
- 지적선
- 법정동 경계
- 도로(대로 이상)
- 도로(중로 이하)
- 철도
- 공공청사
- 공원
- 녹지
- 광장

**장충동 일대
지구단위계획**

도시기반시설 결정도(기정)

scale 1/1,500





LEGE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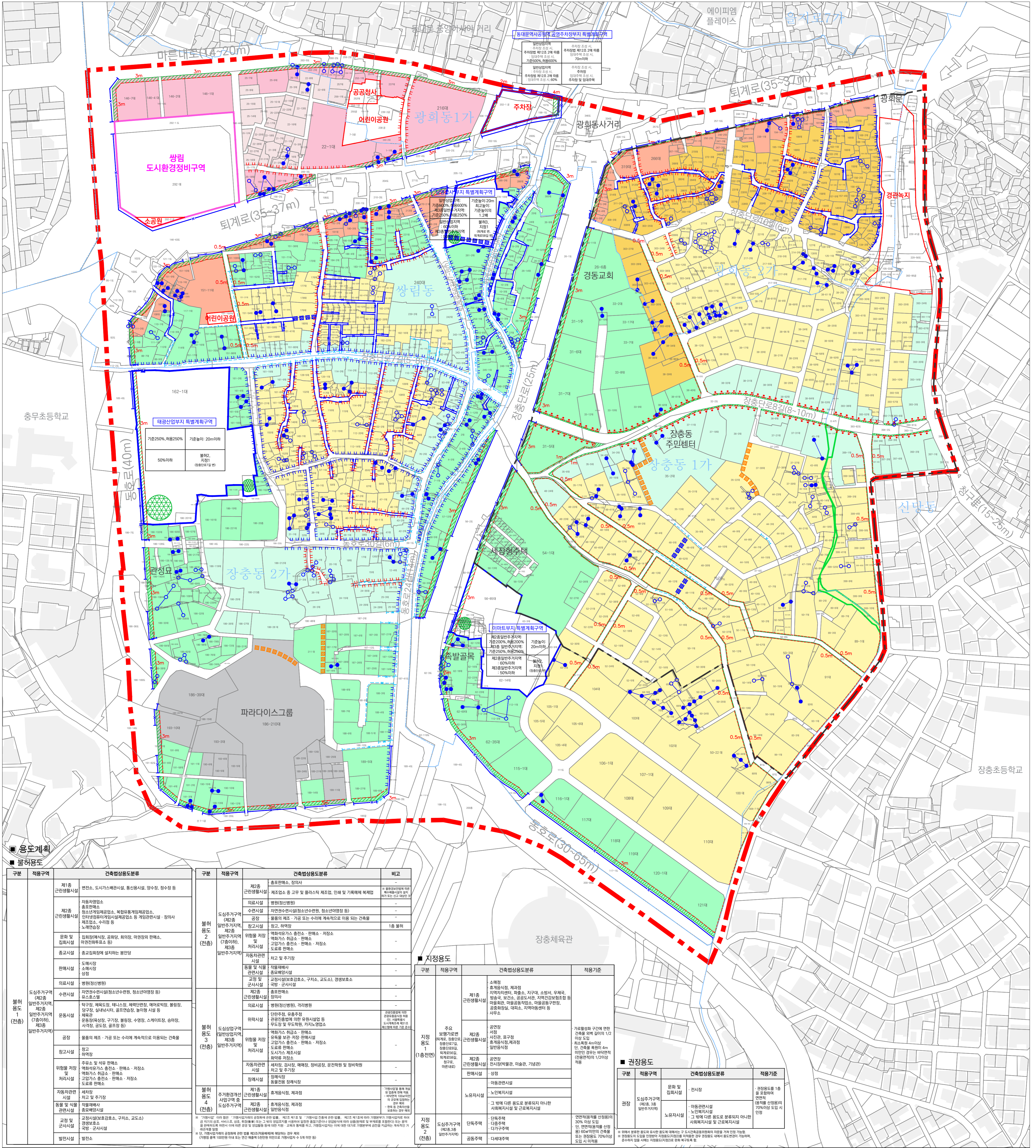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광희권(광희·장충)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
- 지적선
- 법정동 경계
- 도로(대로이상)
- 도로(중로이하)
- 철도
- 광공청사
- 공원
- 녹지
- 광장
- 주차장

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

도시기반시설 결정도(변경)

scale 1/1,500





구역	지정용도	건축법상용도분류	비고
블허용도 1 (전용)	제1종 근린생활시설	번식소, 도시가스배관시설, 통신시설, 영수실, 영수정 등	-
	제2종 근린생활시설	자복차량정비소, 세탁소, 도시가스배관시설, 통신시설, 영수실, 영수정 등	-
	문화 및 집회시설	공연장, 집회소, 문화회관, 체육관, 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공연장, 전시관, 강당, 소극장 등	-
	종교시설	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별관, 사당, 불교사당, 관공서, 사당 등	-
블허용도 2 (혼용)	도심주거지역 (제2종 일반주거지역)	제2종 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1층 이하
	도심주거지역 (제2종 일반주거지역)	제2종 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-
	도심주거지역 (제2종 일반주거지역)	제2종 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-
	도심주거지역 (제2종 일반주거지역)	제2종 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-
블허용도 3 (혼용)	도심주거지역 (제3종 일반주거지역)	제3종 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-
	도심주거지역 (제3종 일반주거지역)	제3종 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-
	도심주거지역 (제3종 일반주거지역)	제3종 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-
	도심주거지역 (제3종 일반주거지역)	제3종 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-
블허용도 4 (혼용)	도심주거지역 (제4종 일반주거지역)	제4종 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-
	도심주거지역 (제4종 일반주거지역)	제4종 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-
	도심주거지역 (제4종 일반주거지역)	제4종 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-
	도심주거지역 (제4종 일반주거지역)	제4종 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-

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
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

scale 1/1,500

※ 상립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
 ※ 주요 보행거리(퇴계로, 장충대로, 장충대로7길, 장충대로8길, 퇴계로56길, 퇴계로58길, 청구로, 마른내로)는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도(지정, 권징)에서 표시하고 있는 지정용도(1층 전면)로 계획된 부분임
 ※ 일반상업지역 내 30m이하 건축 시 또는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 시 저층부 건폐율 80%까지 완화, 방화지구 내 건폐율 90%까지 완화
 ※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서로 다른 계획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 84조(둘 이상의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에 걸쳐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)를 따른
 ※ 높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(문화재보존영향 검토 대상구역)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동시에 적용